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1998. 11. 2.
발 의 자 : 운 영 위 원 장

1. 제안경위

1998년 11월 2일 제56회 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유남렬 위원외 1인의 찬성으로 서면동의된 동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위원회안으로 채택키로 원안 가결함.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1997.5.17 조례 제362호)의 제정으로 마포개발공사가 설립되고,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1998.9.30 조례 제393호)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마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중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 정비코자 함.

3. 주요골자

- 지방자치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마포개발공사의 임원을 답변 범위에 포함(안 제2조 제5호)

4.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1995.12.29 법률 제5069호) 제15조, 제37조
-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1998.9.30 조례 제393호) 제3조

5. 조례(안) : 별첨

6. 예산조치 : 해당없음

- 첨부 :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관계공무원"을 "관계공무원등"으로 한다.

제2조중 "관계공무원"을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구"라 한다)관계공무원등" 으로 하고, 제2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5호를 신설한다.

2. 구청장의 보조기관중 국장, 담당관 및 과장급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구 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자
5. 법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마포개발공사의 임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u>관계공무원</u>의 범위에 관한 조례</p> <p>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u>관계공무원</u>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생략)</p> <p>2.구청장의 보조기관중 국·실장 및 5급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p> <p>3.(생략)</p> <p>4.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u>구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u></p> <p>(신설)</p>	<p>——<u>관계공무원</u>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p> <p>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u>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구"라 한다)관계공무원</u>등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현행과 같음)</p> <p>2.구청장의 보조기관중 <u>국장, 담당관 및 과장급</u></p> <p>3.(현행과 같음)</p> <p>4.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u>구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자</u></p> <p>5.<u>법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마포개발공사의 임원</u></p>